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평가결과 분석 등 기술지원,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및 시험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등 업무를 전문적·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,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1조의2 신설).
-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의3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안 제50조의3은 방산업체가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려는 취지인데,

현행법에 ‘방위산업기술’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, 용어

의 명확성 측면에서 방위산업기술을 “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 제2조제1호1)에 따른 방위산업기술”로 정의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- 또한, 안 제50조의3은 ‘복수국적자’를 “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”으로 정의하고 있으나, 현행 「국적법」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복수국적자(複數國籍者)를 “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²⁾으로 정하는 사람”으로 정의하고 있고, 복수국적자의 법적지위 등이 동 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,

법 체계의 통일성 및 용어의 명확성 측면에서 개정안의 ‘복수국적자’를 “「국적법」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”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-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.

1)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방위산업기술”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.

2) 「국적법 시행령」 제16조(복수국적자의 의의 등)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

2.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

3.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

②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만 20세가 된 때부터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기간을 계산한다.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건
<신 설>	제50조의3(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 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) ① 방위산업 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 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(대한민 국 국적과 외국 국 적을 함께 가진 사 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임원으로 선 임하거나 방위산업기 술 취급 직원으로 채 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② · ③ (생략)	제50조의3(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 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) ① 방위산업 기술(「방위산업기 술 보호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위 산업기술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 하여 방산업체가 외 국인 및 복수국적자 (「국적법」 제11조 의2제1항에 따른 복 수국적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임원으 로 선임하거나 방위 산업기술 취급 직원 으로 채용하려는 경 우에는 미리 방위사 업청장에게 신청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· ③ (생략)

- 다음,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6조제1항제7호³⁾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“「방위사업법」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및 시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”를 규정하고 있는데, 안 제21조의2가 신설될 경우 ‘시험평가의 지원 및 시험평가방법(기법)에 관한 연구’는 「방위사업법」 제21조가 아닌 제21조의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이므로,

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6조제1항제7호 중 “제21조”를 “제21조의2”로 수정하는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보임.

-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병 섭)

3)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6조(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)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「방위사업법」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7. 「방위사업법」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및 시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